

審 査 報 告 書

2009. 11. 2.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0월 1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0월 23일

라. 상정일자 :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9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가.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실무협의체의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의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을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명시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함(안 제9조)

-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할 수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 등)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기타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의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을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고(안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 각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및 제7조)
- 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고(안 제9조)
- 위원의 해촉관련 규정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구청장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0조)
-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 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3 호
----------	---------

제출연월일 : 2009.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분 없이 정의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설치·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2조~6조)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정함 (안 제4·제7조)
- 다.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과 각 협의체의 회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 해촉 사항을 협의체별로 명시함(안 제4·제7조·제10조)
- 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인적자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9조)

마.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09. 8.20 ~ 9. 9.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 및 제4조(중전의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중전의 제4조)를 삭제한다.

제2조(대표협의체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부터 제19조(중전의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5.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팀장,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구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대표협의체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등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p>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현 행	개 정 안
<p>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p>	<p><삭 제></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p>	<p><삭 제></p>
<p>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한다.</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p>	<p>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p>

현 행	개 정 안
<p>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p> <p>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p> <p><신 설> 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신 설>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5.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p>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p>	<p>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제4조의2로 개정></p> <p><삭 제></p> <p>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5.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p>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p>

현 행	개 정 안
<p><u>보건소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u>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u> <p>⑦ <u>실무협의체에</u>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u>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팀장,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u><삭 제></u></p> <p>④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u>실무협의체에</u>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u>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각 협의체의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이</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p>	<p><u>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각 협의체의 <u>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p>

현 행	개 정 안
<p>때에는 <u>위원장이 지명한</u>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u>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u>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u>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u>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위원의 해촉) <u>대표협의체의 위원장</u>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u>당해</u>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u>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u>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u>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소속공무원</u>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u>회의시 회의록을</u>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u>당해</u>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u>당해</u>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p>	<p>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u>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u>당연직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u>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0조(위원의 해촉) <u>구청장은</u>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u>해당</u>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u>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u>사무를 처리할</u>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u>구 소속공무원</u>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u>회의록을</u>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u>해당</u>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u>해당</u>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p>

현 행	개 정 안
<p>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u>당해</u> 협의체 회의 의 의장이 된다.</p> <p>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후단신설></u></p> <p>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u>당해사무소에 비치</u>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u>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u>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u>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u>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u>해당</u>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u></p> <p>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②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u>비치</u>하여야 한다.</p> <p>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u>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u>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u>관계인</u>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u>대표협의체</u>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u>대표협의체의</u>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들에게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u>범위에서</u>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u>예산</u>을 보조하며, <u>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u>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u>예산과 별도의</u>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u>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